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64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이상희 · 신성범 · 김성원
최수진 · 박준태 · 엄태영
김장겸 · 안철수 · 김종양
배준영 · 한지아 · 구자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삭제 없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4항 및 제16조의5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 요청을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피해학생 가족의 심리상담·치료 지원) ① 국가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사건 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치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치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가족의 범위와 심리상담·치료 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 요청을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u></p>
<p>④ ~ ⑥ (생 략)</p> <p><u><신 설></u></p>	<p>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u>제16조의5(피해학생 가족의 심리상담·치료 지원) ① 국가는</u></p>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사건 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치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치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가족의 범위와 심리상담·치료 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